

#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24
----------	-----

2024. 9. 12.  
도시교통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8. 23. / 남양주시장  
나. 회부일자 : 2024. 8.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12.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본 사무를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재위탁) 함으로써 관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항
- 센터의 운영 및 관리
-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운행 및 관리
- 이용자에 대한 이용신청 접수 및 자격심사
- 차량 이용요금 징수
- 차량에 대한 종합정보망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 기타 본 사업에 부속되는 사항 등

○ 위탁시설 개요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콜관제시스템

시 설 명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 재 지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50(덕성빌딩 2, 3층)
시설규모	270m <sup>2</sup> (2층 76m <sup>2</sup> , 3층 194m <sup>2</sup> )
시설용도	사무실 및 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운영인력	76명(센터장1 / 사무원7 / 상담원5 / 운전원63)

○ 특별교통수단 및 차고지

구 분		대 수	휴게공간
다산동	청사6부지 차고지	34대	101m <sup>2</sup>
진건읍	제2공영주차장	23대	76m <sup>2</sup>
와부읍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3대	12m <sup>2</sup>
합 계		60대	189m <sup>2</sup>

○ 민간위탁 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서비스의 연속성과 근로자 고용 안정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식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7,000백만원[2025년 본예산(안)]
- 국비 570백만원(정액) / 도비 1,929백만원(30%) / 시비 4,501백만원(70%)

(단위 : 백만원)

특별교통수단		바우처택시	소 계
인건비	운영비	운영비	
4,490	1,713	797	7,000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구 분	검 토 의 견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거 공공기관 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가능</li> </ul>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노인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사무로 민간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li> </ul>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영리법인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 운영 대비 예산 절감 가능</li> </ul>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축적된 경험 및 전문성을 통해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li> </ul>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별 실적보고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등을 통한 사업 개선 및 발전 도모에 용이</li> </ul>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지도·감독)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통하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li> </ul>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교통수단 외 대체수단 차량(바우처택시 등)의 도입·운영을 통한 기존 특별교통수단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교통복지 서비스 향상</li> </ul>
총 합 의 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민간 전문인력 활용 가능 등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li> </ul>

○ 향후 추진계획

- 2024. 9. : 시의회 심의 및 수탁기관 공개 모집
- 2024. 10.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 2024. 12.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 예정인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무를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2015년 7월에 설치되어 9년 동안 계속해서 총 5회에 걸쳐 민간법인(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4회),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 유지재단(1회/현재))에 재위탁 운영해왔으며, 의회 동의 절차는 2015년 3월에 처음 위탁 동의를 받고 금번 위탁기간 만료 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 2023년말 현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요양 1~3등급 등 1,257명이 지난 한해 기준 116,472건의 이용하는 등 원활한 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금년부터 시행하는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직원 친절교육 등을 통해 보다 질 좋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 남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